

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30일

3. 제안이유

○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(2003. 7.14, 행정자치부령 제203호)됨에 따라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판인대장에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,

○ 전자이미지판인도 도보에 공고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전자판인을 전자이미지판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개선함(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)

-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관
인임을 표시하여 도보에 공고하도록 함(제9조제1항)
-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지 않고 영구 보존토록 함(제16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
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현행규정상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
17811호)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00203호)이 개
정됨에 따라,

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, 전자관인을 전자이미
지관인으로 명칭 변경, 전자이미지관인의 도보 공고, 폐기된 공
인의 보존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, 현행조
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서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16조 제1항에서 공인을 폐기하고자할 때 “총무과장에게 이
관하여야 한다”로 개정하면서,

제2항 “총무과장은 반납된 공인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
“이관”과 “반납”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
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